

저작권 문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2021
08
vol. 324



성일한, 섬지코지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려서 판매, 저작권 침해인가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사람의 캐릭터는 종종 캐릭터 상품화 사업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뽀로로에 나오는 뽀로로, 크롱, 에디 등은 인형이나 장난감 등으로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다. 마블사의 슈퍼히어로들, 즉 헐크,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도 전형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애니메이션 영상물, 장면 만화, 영화, 게임 등에서 등장인물로 나오는 개별 캐릭터 자체가 영상물, 게임물이나 만화 전체와는 별도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캐릭터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인데, 캐릭터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는 그런 측면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만화 영화 제작사가 해당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 캐릭터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해당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또한 캐릭터의 상품화가 진행되었지만 특정 분야 또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고객 흡인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저작물로서 캐릭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영상물 등에 나오는 등장인물 캐릭터의 무단 이용이 문제가 되어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로 게임물 ‘실황야구’에 나오는 귀여운 야구선수 캐릭터를 들 수 있다. ‘실황야구’ 캐릭터는 단순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이 개성적으로 도안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저작물이라고 판단된 바 있다. ‘101마리 달마시안’에 등장하는 달마시안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개 모양을 부착한 원단을 달마시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생산,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도안을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변형해서 새로운 미술작품에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우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라고 보아야 한다. 어설프게 수정해도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면 원저작물과 별개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려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허용되는 이용범위는 복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림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복제가 아니라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블로그에 캐릭터 그림을 올리는 것이 경우에 따라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연예인이 그린 포켓몬스터 그림을 자선경매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사건도 그 목적이 기부였고 복제한 건도 1건이었지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